

서울특별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경위

가. 제 출 자 : 정진술 의원 외 34명

나. 의안번호 : 제2557호

다. 제출일자 : 2021. 8. 9.

라. 회부일자 : 2021. 8. 18.

2. 제안사유

- 「주차장법」이 주차장특별회계를 주차환경개선과 주차질서유지, 그리고 특별회계의 운영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 서울특별시 조례에도 이를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주차장조성 및 유지관리,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및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관리, 주차장 정보구축, 주차공유 지원사업 등 주차환경개선을 위한

사업, 주차질서 홍보 및 교육, 주차단속활동 및 단속 장비구입, 단속시스템 구축 등 주차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 주차장 특별회계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추가함(안 제7조2항)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주차장법」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21. 8. 20 ~ 2021. 8. 27

○ 제출의견 : 의견없음

라.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

○ 서울시장(도시교통실 주차계획과) : 원안가결

- 본 개정안은 상위 법령(주차장법) 개정 내용을 ‘서울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반영하는 것임(주차장특별회계 사용 용도를 주차환경개선사업, 주차질서유지사업, 주차장특별회계 관리 경비로 명확화)

-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이므로 이견 없음

5.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장훈)

가. 개 요

- 동 개정조례안은 주차장특별회계¹⁾의 수입금 사용용도를 명확히 규정하는 「주차장법」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특별회계 목적에 맞는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예산 편성과 집행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 참고 : 「주차장법」 개정 내용 <신설 2021. 1. 12.>

제21조의2(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 ④ 제1항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주차환경개선사업: 주차장조성 및 유지관리,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및 주차환경 개선지구 지정·관리, 주차장 정보구축, 주차공유 지원사업 등 주차환경개선을 위한 사업
2. 주차질서유지사업: 주차질서 홍보 및 교육, 주차단속활동 및 단속장비구입, 단속시스템 구축 등 주차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
3. 주차장특별회계의 조성·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나. 검토의견

- 「주차장법」 제21조의2에 따르면 특별시장은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설치 및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고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

1) 주차장법 제21조의2(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특별시·광역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설치 및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서울시는 교통사업특별회계 내에 별도의 「주차장관리계정」을 두어 예산을 관리 운영하고 있음²⁾

- 이와 관련하여 「주차장법」에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출 규정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지방자치단체마다 세출 용도를 달리 정하는 등 논란의 소지가 발생함에 따라, 지난 '21년 1월 21일 「주차장법」 개정을 통해 주차장특별회계 사용 용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바 있음³⁾
-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은 관련 법 개정사항과 더불어 현행 조례 내에 주차장관리계정을 구분⁴⁾하여 주차장특별회계 재원을 공영주차장의 설치·운영 및 주차환경 개선이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편성·운영하고 있는 서울시 현실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
- 다만, 동 개정조례안이 시의회를 거쳐 공포·시행될 경우 현행 조례의 주차장관리계정 세출예산과 개정안에서 규정한 사업용도가

2) 제21조의2(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설치 및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⑤ 제1항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3)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자 : 문진석의원 등 10인 - 의안번호 : 2103367 - 회의결과 : 의결(대안반영폐기)
- 대안번호 : 2103367 - 대안 회의결과 : 원안가결 - 공포일자 : 2021. 1. 12
-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광역시 지역 군수가 설치하는 주차장특별회계의 재원 중 하나로 광역시의 보조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출 용도를 달리하거나 주차장 조성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차장특별회계의 용도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중략)

4) 서울시는 주차장법에 따라 주차장특별회계를 교통사업특별회계 내 주차관리계정으로 운영하고 있음
주차장법 제21조의2(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 ⑧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회계에 이 법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를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정(計定)은 분리하여야 한다.

불일치함에 따라 기존 예산 집행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 개정조례안 시행일을 다음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도록 부칙에 적용례를 둘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